

## 4.3.4 교직과정운영규정

제정	2000. 04. 21.
개정	2003. 07. 08.
개정	2006. 10. 19.
개정	2008. 03. 21.
개정	2009. 02. 24.
개정	2014. 11. 03.
개정	2016. 02. 18.
개정	2017. 02. 22.
개정	2017. 06. 19.
개정	2018. 07. 26.
개정	2020. 02. 17.
전부개정	2021. 03. 25.
개정	2023. 02. 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교직과정은 본교의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학 중에 이수하여야 할 소정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직과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원양성과정 학과의 학과장 또는 전임교원,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결정
4.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설치학과 인원 및 표시과목) 본교 교직과정설치 학과 및 학과별 승인인원, 표시과목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신청 및 선발) ① 교직과정 설치 학과의 학생으로서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1학기 진학 후 소정기일 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서식 제1호)를 학과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 신청인원은 <별표1>의 학년도 기준 학과별 승인인원 2배 이내로 제한한다.

③ 교직과정 설치 학과에서는 신청자 중 <별표1>의 승인 정원 이내에서 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내규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직 적성·인성검사 등을 참고하여 선발한다.

제7조(교직과정 개설 및 수강신청) ① 교직 교과교육과목은 전공교육과정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영역에서 1과목씩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제8조(교직과정 교과목 이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자격  
증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 및 교직과목<별표2>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실습) ① 학교현장실습은 졸업예정학년 제1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실습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한다.

제10조(무시험검정신청)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무시험검정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한다.

제11조(기타 합격기준 및 성적산출) ① 교직과정이수자는 제8조의 교직과정 교과목 이수 외에 교원자격검정 기타 합  
격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교원자격검정 기타 합격기준 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③ <별표3>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부적격자의 경우 학과장 면담 후 재검사를 2회 응시할 수 있다.

④ 이수구분을 P(Pass)와 NP(Non Pass)로 운영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무시험검정 평균성적 산출 시 이수학점에 포  
함하지 않는다.

제12조(기타)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8조 제3항은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선발인원

학과명	현행 (~2021학년도)			변경 후 (2022학년도~)
	자격종별	표시과목	승인정원	승인정원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없음	6	4
뷰티디자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미용	2	0
외식조리창업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조리	2	0
호텔조리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조리	2	2
계			12	6

〈별표 2〉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입학기준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실기교사
2013학년도 입학자 이후	교직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① 교육학개론 ② 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④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⑤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⑥ 교육사회 ⑦ 교육심리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① 교육학개론 ② 실기교육방법론
	교직소양	▶6학점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 ② 교직실무 ③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해당없음”
	교육실습	▶4학점 이상 ① 학교현장실습 ② 교육봉사활동	“해당없음”
	합계	총 22학점	총 4학점

〈별표 3〉 기타 합격 기준 요건 <개정 2023.02.02.>

입학기준	성인지 교육 이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결격사유 확인
2013~2020 학년도 입학자	※ 2021학년도 기준 ▶1~3학년 재학(복학)생 : 2회 이상 ▶4학년 재학(복학)생 : 이수면제	적격 판정 2회 이상	실습 2회 이상	성범죄이력 마약류 중독여부 ※ 21.6.23 이후 교원자격 검정대상자부터 적용
2021학년도 입학자 이후	2회 이상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 )학과 ( )학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교사자격기준에 의하여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기준에 의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성적기준, 교직 적성·인성검사기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기준, 성인지교육이수,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그 외 교원양성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년 월 일

학과장 (인)

학부모 (인)

신청자 (인)

초당대학교총장 귀하